# 사단법인 한국계량경제학회 정관

2000년 2월 11일 제정

# 제1장 총칙

## 제1조(명칭)

본회는 사단법인 한국계량경제학회(The Korean Econometric Society, 이하 "본회"라 한다)라고 부른다.

# 제2조(목적)

본회는 계량 및 수리적 방법을 써서 한국의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일체의 활동을 고무·지원함으로써 이론·실증 양면에서 그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# 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

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
# 제4조(사업)

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.

- 1. 정기학술발표회
- 2. 정기·부정기의 학술지 발간
- 3. 정기·부정기의 세미나 개최
- 4. 국내외 타기관과의 교류
- 5.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

# 제2장 회원

#### 제5조(회원)

본회는 정회원, 준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구성되며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.

1. 정회원

경제학 및 인접분야에서 석사 또는 동등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, 계량 및 수리적인 방법을 써서 이론적 및 실증적 활동을 하고 있거나 그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 자.

- 2. 준회원
  - 해당분야의 대학원 재학생 또는 그에 준하는 자
- 3. 기관회원

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 및 단체

제6조(회원의 가입, 탈퇴 및 제명)

- 1. 회원의 가입은 회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고, 회원총회(이하 "총회"라 함)의 의결을 거쳐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2. 회원은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본회를 탈퇴할 수 있다.
- 3. 회원은 이 정관을 위반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, 또는 회원으로서 이에 상당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였을 때에는,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.

#### 제7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회원은 다음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
- 1.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2. 회원은 본회가 개최하는 학술발표회 및 세미나에서 발표할 수 있다.
- 3. 회원은 회장의 동의를 얻어 국내외 행사에서 본회를 대표할 수 있다.
- 4. 회원은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범위 내에서 회장과 본인의 합의하에 주어진 역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## 제8조(연회비)

연회비의 액수 및 징수방법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 제3장 임원

#### 제9조(임원)

- 1. 본회의 임원은 회장1인, 부회장1인, 사무국장1인, 편집이사2인, 감사2인으로 구성하며, 감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법정 등록이사를 겸한다.
- 2. 임원중에 약간명은 상임이사가 된다. 상임이사는 보수를 얻는 다른 직책을 겸할 수 없다. 단, 본회의 특성에 비추어, 경제학 분야의 교수는 상임이사를 겸할 수 있도록 한다.

#### 제10조(선출)

- 1. 모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 단, 사무국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.
- 2. 회장과 사무국장은 상임이사가 된다.
- 3. 형 집행중인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
#### 제11조(임기)

- 1. 모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필요에 따라 총회의 의결후 연임할 수 있다.
- 2.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차기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, 새로운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전기임원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전임회장은 차기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총회소집권을 갖는다.

#### 제12조(임원 궐위시 보충)

임원이 임기중 궐위될 경우 회장이 후임자를 선정하고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. 선정된 임 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#### 제13조(임원의 임무)

- 1.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.
- 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3. 사무국장은 이사회와 협의하여 본회의 재무를 관리하고, 총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, 본회의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, 본회가 계획하고 수행하는 제반 사업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한다.
- 4. 편집이사는 학술지 및 기타 연구자료의 발간사업을 수행한다.
- 5.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- 6.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.
  - 가.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  - 나.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 - 다. 가목 및 나목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.총회 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  - 라. 다목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.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 는 일
  - 마.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
# 제4장 총회

#### 제14조(총회의 기능)

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- 1.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- 2. 정관 및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
- 3. 사업계획,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4. 기타 본회의 해산 등 중요한 사항

#### 제15조(총회의 소집)

- 1.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중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 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- 2.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개최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#### 제16조(총회의 의결정족수)

- 1.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.
- 2. 총회의 의사는 정관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회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## 제17조(총회 의결 제척 사유)

- 1. 본회와 회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
-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회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

#### 는 사항

제18조(총회 소집의 특례)

회장은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고,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 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# 제5장 이사회

제19조(이사회의 기능)

이사회는 본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하고,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추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- 1. 업무의 진행
- 2. 사업계획의 운영
- 3. 예산.결산서 작성
- 4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- 5.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- 6. 기타 주요사항

#### 제20조(이사회의 소집)

회장은 연2회 정기 이사회를 소집한다. 단, 필요시에는 회장이나 감사 또는 이사 3인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#### 제21조(이사회 의결정족수)

이사회는 제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출석을 못하더라도 서면으로 위임한 자는 이를 출석한 것으로 하고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.

## 제22조(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)

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.

# 제6장 재산 및 회계

#### 제23조(재정)

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- 1. 회원의 연회비
- 2. 특별회비
- 3. 기금
- 4. 기타수입

#### 제24조(기금)

본회는 기금을 설치, 운영할 수 있다.

# 제25조(회계연도)

본회의 회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.

#### 제26조(예산)

본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회계연도 개시후 2월 이내에 수립,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## 제27조(결산)

본회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감사의 확인을 거쳐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## 제28조(임원의 보수)

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.

# 제7장 보칙

# 제29조(시행)

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## 제30조(정관개정)

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## 제31조(규약의 제정 및 변경)

본회의 정관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규약의 제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에 의한다.

#### 제32조(해산)

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
## 제33조(잔여재산의 처리)

본회가 해산될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.

# 제34조(서면결의)

- 1. 총회의 의사결정은 서면결의에 의한다.
- 2. 이사회의 의사결정은 서면결의에 의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.